

+ 코로나19로부터 +
안전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사장님이”
지켜주세요!



➡ 사업장에 외국인노동자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1 감염병 의심으로 검진받는 경우 외국인도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체류자격이 없는(불법체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검진에 임하도록 하면, 나중에 단속이 재개되어 단속된 경우, 고용주 범칙금 감면(법무부 보도자료 2020. 5. 4)

➡ 다국어 통번역 안내전화

전화번호	이용시간	언어
☎1345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24시간	영어, 중국어
	09:00~18:00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1330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센터	24시간	영어, 중국어, 일본어
	08:00~19:00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1577-1366 다누리콜센터	24시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우즈베키스탄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 사업장내 확진환자, 유증상자 등 발생시 행동요령

즉시 해당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착용 후
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보건당국에서 사업장 조치전까지 대기)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즉시 신고



사업장 내 상황 전파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방문고객 포함)



사업장 내 전체 노동자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및
작업장 대기 또는 이동 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하거나 발열(37.5°C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의 경우
보건당국에서 조치 전까지 별도의 격리 장소에서 대기

➡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역학조사, 사업장 방역(소독* 등),
코로나19 확진 검사 등을 실시 협조·지원

*질병관리본부 소독 안내 지침에 따라 소독을 실시 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장소 사용 가능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확진 검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시행 협조·지원

*입원, 자가격리 또는 격리 해제 등